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31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김소희・임이자・김선교
김상훈・우재준・백종헌
안상훈・이헌승・조정훈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

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9. (생 략) <신 설> ③ ~ ⑩ (생 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 ③ ~ ⑩ (현행과 같음)